

학칙 시행세칙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2. 2. 20		16		
2	2013. 5. 15		17		
3	2014. 2. 24		18		
4	2014. 5. 22		19		
5	2014. 9. 17		20		
6	2015. 2. 27		21		
7	2015. 3. 1		22		
8	2015. 12. 11.		23		
9	2016. 5. 19.		24		
10	2016. 9. 29.		25		
11	2016. 12. 2.		26		
12	2017. 3. 21.		27		
13	2017. 11. 29.		28		
14	2018. 3. 12.		29		
15			30		

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항공대학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0.>

제 2 장 재학연한

제2조 (재학연한) ① 재학 중 잔여기간을 통산하여도 재학연한에 초과가 예상되는 자는 그 사유발생 해당학년말로 성적사정을 종료하여 제적 처리한다.
②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제 3 장 입 학

제3조 (입학의 구분) ① 삭제<2012.2.20.>

② 삭제<2012.2.20.>

③ 삭제<2012.2.20.>

제4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매학년도 수업개시 4주 이내에 허가하되, 전적 대학의 이수 학점을 감안하고 편입학 시험에 합격된 자를 허가한다.<개정 2012.2.20.>

② 편입학자의 전적 대학 이수과목의 인정은 해당 학부(과)의 교과과정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 중에서 해당 학부(과)장이 인정하는 과목에 한한다.

③ 편입학자의 인정학점은 2학년 33학점, 3학년 65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2.2.20., 2015.3.1.>

④ 편입학 자에게는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학년의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7.9.1.>

⑤ 선수과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업료를 과할 수 있다.

제5조 (재입학) ① 학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재입학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9.1.>

② 재입학은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부(과)의 학업성적 등을 사정하여 기 이수한 학점수에 따라 재입학 학년학기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2.20.>

③ 삭제<2013.5.15.>

④ 삭제

⑤ 학칙 제43조에 의해 제적된 자는 학부(과) 운영내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재입학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신설 2007.9.1., 개정 2008.2.11.>

제6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허가는 소정의 입학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정원 외 입학자의 입학허가 및 전형방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개정 2018.3.12.>

③ 본 대학교에 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입학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입학 전의 학력 및 자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입학지원서 및 입학구비서류 등에 허위 또는 변조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및 시험에 관한 제반 규정에 저촉되었을 때<개정 2018.3.12.>

제 4 장 등록과 수강신청

제7조 (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수강신청 및 기타 제반 절차를 필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2.24., 2018.3.12.>

- ② 삭제<2014.2.24.>
- ③ 삭제<2014.2.24.>
- ④ 삭제
- ⑤ 삭제<2014.2.24.>
- ⑥ 삭제<2014.2.24.>

제8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 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과운영상 전 학기말에 조기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은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에 의거하여 최소 1과목 이상(사회봉사 제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0.7.1., 2015.3.1.>

③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1학년 21학점, 2, 3, 4학년 18학점(과목 재수강 포함)까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9.1., 2008.10.1., 2012.2.20., 2015.3.1., 2016.9.29.>

1. 사회봉사학점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또는 편입학생의 경우에 매학기 3학점을 초과 이수케 할 수 있다.
3. 1학기 수강신청 후 18학점 기준으로 2학점 이내의 잔여학점을 2학기 수강학점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⑤ 1, 2학기에 연속되는 과목은 계속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강신청 인원이 10명(교양과목은 20명) 미만인 과목은 설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수강신청은 우선적으로 하급학년의 미취득과목부터 신청하여야 하며, 선수를 요하는 과목은 우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⑧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해당과목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교과목 내용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2.2.20.>

⑨ 수강신청의 변경은 교과목이 합강, 폐강 또는 강의시간의 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기 초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⑩ 수강신청 취소기간은 당해학기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군제대 복학생에 한하여 수업일수 1/2선까지로 할 수 있다.
- ⑪ 시간제 등록생은 학기당 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⑫ 삭제<2012.2.20.>
- ⑬ 수강신청 전 반드시 수강지도 상담을 완료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의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7.1., 개정 2018.3.12.>
- ⑭ 가상대학에서 사이버강좌로 개설된 교과목은 학기당 6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제 5 장 교과와 학점

제9조 (교과편성) ① 교과과정은 학칙 제18조의 교과편성에 의하여 학부(과)장이 작성,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3.12.>

③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은 전공 영역별 교과과정표에 의하며 개설 교과목의 강의는 교수요목에 의한다. 교과목별 담당교수의 배정은 해당 학부(과)장이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공영역별 교과과정표에 없는 교과목을 전 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8.10.1.>

제9조의2 (공학교육인증의 심화프로그램 운영) ①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항공재료공학과는 비인증과정인 일반 프로그램과 인증과정인 심화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개정 2010.7.1., 2015.12.11.>

② 제1항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7.1., 2018.3.12.>

제9조의3 (국제항공교육인증의 심화프로그램 운영) ①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경영학부는 일반 교육과정과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7.1., 2012.2.20., 2018.3.12.>

② 제1항의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7.1., 2018.3.12.>

[본조 신설 2008.2.11.]

제10조 (교과이수) ① 필수과목 중 미취득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대체과목이 지정 없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② 필수과목 중 미취득 과목의 학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년에 관계없이 변경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동일과목을 중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단, 과목재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선수과목은 각 학부(과)장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 제 <2008.2.11.>

⑥ 삭 제 <2007.9.1.>

- ⑦ 삭 제
- ⑧ 삭 제
- ⑨ 본 대학교와 협정 체결된 국내·외 정규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교류 중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본교 취득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⑩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군사교육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교양선택과목으로 하며, 학기당 3학점 이내로 인정한다.<개정 2008.2.11., 2013.5.15.>
- ⑪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실천사항에 대하여 재학기간 중 총 2학점의 범위 내(학기당 1학점)에서 교양선택과목(표시과목 사회봉사)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봉사활동 실천실적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2.11.>
- ⑫ 현장실무·실습과목과 총장이 정하는 일부 교과목에 한하여 소정기관에서 현장 학습을 이수한 학생에게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의 시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2.11.>

제11조 (학점인정) ①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취득 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 각 호의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1/2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10.1., 2015.3.1.>

1. 가상대학에서 사이버강좌로 취득한 학점으로 최대 24학점
 2. 경인지역대학 학점교류 협정에 의해 협정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21학점
 3. 학점교류협정에 의한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4. 본 대학이 인정한 국외 정규대학에서 방학 중 어학연수과정 최대 6학점
 5. 외국인 유학생이 본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교육을 이수할 경우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6. 본 대학교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신설 2013.5.15.>
- ② 편입생 및 위탁생의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과목에 대한 성적인정은 학부(과)장이 인정하는 과목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0.>

[전문개정 2008.2.11.]

- ③ 재학기간 중 학생이 수행하는 창업준비 활동 및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실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그 활동을 본교 취득 학점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정범위, 인정학점과 시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9.29.>

제11조의2 (복수학위과정) 복수학위과정이란 본교와 국내·외 대학 간의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1/2까지 인정하여 각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3.1.>

- 제11조의3 (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칙 제27조의 3에 의해 각 학부(과)는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석사 연계 과정생의 지원자격은 본 대학에서 5개 학기 또는 6개 학기를 등록한 자로 한다. <개정 2007.9.1., 2008.2.11.>
 - ③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학사학위과정 3.5년, 석사학위과정 1.5년)으로 한다.
 - ④ 제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석사 연계 과정생의 학부 졸업여건 중 총 이

수학점 124학점 이상 취득,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50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원 과목을 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 2012.2.20., 2015.3.1.>

⑤ 학·석사 연계과정에 대한 운영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4 (학·군 제휴) ① 군에서 추천한 군 간부의 학위과정 위탁교육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입학할 수 있다.

② 군위탁생은 군내 교육기관 및 군 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군 위탁생에 대하여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하여 학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 위탁생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학·군 제휴협약서에 따른다.

제12조 (경과조치) 삭 제

제 6 장 시험과 성적

제13조 (시험의 구분)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구분한다.

1. 정기시험은 매 학기말에 시행한다.

2. 수시시험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제14조 (자격상실) 학점 취득 자격이 상실되는 성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며, 학적부에 F로 기재한다.

1. 학칙 제30조제2항에 의거 총 수업시간 수의 1/4이상 결석한 과목의 성적

2. 시험 중 부정행위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3. 기타 관련법에 의거 부정행위 등의 행위로 취득한 성적

[전문개정 2018.3.12.]

제14조의2 (유고결석) ① 유고결석을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석 후 1주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학부(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0.>

② 유고결석은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기간에 국한하여 인정한다.

1.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 일주일 이내

2.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 3주 이내<개정 2015.2.27.>

3. 병역법에 의한 각종 징소집 및 징병검사 - 해당일

4.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신설 2015.2.27.>

③ 유고결석은 학칙 제30조 제2항의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장기결석으로 학칙에 규정된 출석일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즉시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09.3.1.>

제15조 (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정기, 수시시험 등 시험성적과 출석, 과제 등 평소성적을 종합평가 하며, 전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 유형 I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기타 과목의 특성으로 총장이 승인한 과목은 상대평가 유형 II 또는 절대평가

를 할 수 있다. 상대평가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9.3.1., 2012.2.20., 2013.5.15., 2015.2.27., 2015.12.11., 2018.3.12.>

1. 상대평가 유형 I : A⁺, A⁰(30% 이내), A⁺, A⁰, B⁺, B⁰(70% 이내)<개정 2015.2.27.>
 2. 삭제 <2015.2.27.>
 3. 삭제 <2015.2.27.>
 4. 상대평가 유형 II : A⁺, A⁰(40% 이내)<신설 2015.2.27.>
- ② 매학기 수업종료일기준 4주 내에 질병(입원가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군 입대로 학기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학기 중에 평가한 성적을 학기말 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4.2.24., 2015.12.11., 2017.11.29., 2018.3.12.>
- ③ 전 항의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기말시험 대체원을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조종실기 교육의 평가는 비행교육원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학점 인정은 항공운항학과장이 확인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 ⑤ 대학원과정생, 국내외 교환학생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5.2.27.>
- ⑥ 본 조항에 정하여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성적관리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2.2.20., 개정 2015.2.27.>

제16조 (수수료) 추가시험 및 재시험 응시자에게는 소정의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성적정정)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정은 담당교수가 소정의 정정원에 사유를 기재하고 성적정정에 대한 근거서류(답안지 등)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3.12.>

제18조 (성적공시 등) 성적은 매 학기 말 학생 및 소속 학부(과)장, 학부형에게 공시 및 통보한다.<개정 2018.3.12.>

제19조 (성적산출) 성적의 산출(평점평균)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합격(Pass) 또는 불합격(No Pass), 과목재수(Retake)로 지정된 과목은 평점평균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07.9.1., 2008.2.11., 2014.5.22.>

2014학년도 2학기 이후 성적 :

$$= \frac{\sum(\text{과목별 학점수} \times \text{과목별 성적평점})}{\text{총 수강신청 학점 수(P, NP, R학점 제외)}}$$

2014학년도 1학기 이전 성적 :

$$\frac{\sum(\text{과목별 학점수} \times \text{과목별 성적평점})}{\text{총 취득학점 수}(P \text{ 학점 제외})}$$

제 7 장 전 과

- 제20조** (자 격) ① 본 대학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9.1., 2012.2.20., 2014.9.17., 2016.12.2.>
- ② 항공운항학과 학생은 타 학부(과)로 전과할 경우 조종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으로 전과한다.<개정 2012.2.20.>
- 제21조** (시 기) ① 전과는 매 학년도 초 수업개시 4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사구조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 ② 삭 제
- 제22조** (절차와 방법) ①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전과원에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부(과)장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입 학부(과)의 수용능력에 따라 전과 학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3조** (학점인정) ① 전과한 학생의 기 취득학점 인정은 전입한 학부(과)에서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전과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과)장이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케 할 수 있다.
- ③ 삭제<2016.5.19.>

제 8 장 전 공

- 제24조** (부전공) ① 학칙 제36조의2에 따른 주전공(이하 “제1전공”이라 한다) 외에 제2전공으로 부전공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3.12.>
1. 2학년 이상(1학년 수료 이상) 진급예정인 재학생은 매 학기 개강 전에 원하는 학부(과)에 부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11., 2009.3.1., 2012.2.20., 2018.3.12.>
 2. 삭제
 3. 부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원을 소속 학부(과)의 학부(과)장 및 부전공 학부(과)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9.1. 2013.5.15.>
 4. 모든 학부(과)는 부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부(과) 수용능력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부전공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3.12.>
 5.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목과 부전공 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6. 학점이수는 부전공학부(과)에서 개설한 부전공 이수 과목 중 필수과목의 학점(9학점 이상)과 선택과목을 합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의 부전공 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부전공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9.1.>

7. 부전공 이수를 위한 수강 지도는 해당 부전공 학부(과)장이 한다.<개정 2018.3.12.>
8. 부전공의 이수 사정은 부전공학부(과)에서 하되, 제1전공 이수 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졸업학기말 성적 산출 후 부전공학부(과)에서 부전공 과목 이수를 확인하여 부전공 이수 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하면 부전공 과목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07.9.1., 2018.3.12.>
9. 실험, 실습, 실기를 요하는 과목을 부전공으로 택할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부전공의 교과목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9.1., 2013.5.15., 2018.3.12.>

제25조 (복수전공) ① 제1전공 외에 제2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 대학교 2학년 이상(1학년 수료 이상) 진급예정인 재학생은 매 학기 개강 전에 원하는 학부(과)에 복수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2. 모든 학부(과)는 복수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부(과) 수용능력 및 특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복수전공 이수를 위하여 취득한 학점은 제1전공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4. 복수전공 신청은 매학기 개강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1전공이수 학부(과)장과 복수전공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해당 복수전공 학부(과)장이 시행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제1전공 이수 학부(과) 학생은 복수전공 학부(과)의 전공과목(학부(과) 지정 전공필수과목 반드시 이수) 중 42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동일 학부 내 복수전공자는 전공과목(학부(과) 지정 전공필수과목 반드시 이수) 중 36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나. 복수전공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전공과목 42학점 이외 9학점까지 전공과목 중에서 선수로 지정하여 이수시킬 수 있다.
 - 다. 제1전공을 이수한 자가 복수전공 이수를 중도포기 하거나 제1전공 이수기간 내 소정의 복수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복수전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학부(과)별 운영내규에 따라 기 취득한 복수전공 교과목이 부전공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라. 복수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 취득학점의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한다. 단, 동일학부 내 복수전공 신청자의 기 취득학점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마. 복수전공을 이수 한 자가 제1전공의 이수요건과 제34조의 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였을 경우 복수전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자유전공학부 소속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바.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 및 이수학점 인정은 제1전공 이수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졸업 학기말에 성적 산출 후 복수전공 학부(과)에서 복수전공 과목 이수를 확인하여 복수전공 이수 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하면 이수학점을 복수전공 과목으로 인정한다.

사. 부전공 이수 중 동일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경우 부전공 자격의 효력은 상실한다.

아. 복수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실험실습비 등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7.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칙 제28조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② 복수전공의 교과목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2.]

제25조의2 (학부 내 전공) 학부 내 전공신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18.3.12.>

2. 전공의 배정은 제1지망 전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지망 전공 신청자가 많아 학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정의 배정 원칙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13.5.15.>

3. 학부 내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소속한 학부 내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은 학부내규에 따른다.<개정 2018.3.12.>

4. 학생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심화전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전공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1회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5. 전공이 변경된 학생이 기 이수한 전공 학점은 졸업사정 시 교과목 내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전공의 주전공 또는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2.20.>

제25조의3 (연계·융합전공) ① 학칙 제38조의3에 의한 연계·융합전공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3.12.>

1. 연계·융합전공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8.3.12.>

가. 해당 연계·융합전공이 설치되는 단과대학의 학장은 연계·융합전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융합전공 운영위원회는 관련 전공교수로 구성한다.

2. 연계·융합전공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8.3.12.>

가.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 선임

나. 교과과정 운영 등 중요사항 논의

②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 2학년 이상(1학년 이상 수료) 진급예정인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3.12.>

가. 삭제 <2017.3.21.>

나. 삭제 <2017.3.21.>

2. 신청 시기 및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8.3.12.>
- 가. 매 학기 개강 전에 소정의 신청원을 소속 학부(과)장 경유하여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6.9.29.>
- 나.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이수신청자를 일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및 수강지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8.3.12.>
- 가. 연계·융합전공 학점 이수는 36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융합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12학점 이내에서 중복인정 받을 수 있다.<개정 2018.3.12.>
- 다. 연계·융합전공 이수허가 이전에 이수한 제1전공의 과목도 연계·융합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라. 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해당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는다.
4. 연계·융합전공 이수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8.3.12.>
- 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과 연계·융합전공의 이수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학칙 제28조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8.3.12.>
- 나. 제1전공을 이수한 자가 연계·융합전공 이수를 중도포기 하거나 제1전공 이수 기간 내 소정의 연계·융합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계·융합전공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8.3.12.>
- 다. 연계·융합전공을 이수 한 자가 제1전공의 이수요건과 제34조의 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였을 경우 연계·융합전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자유전공학부 소속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3.12.>
5. 연계·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말까지 소정의 연계·융합전공 이수 취소신청원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연계·융합전공 이수 기간 동안 취득한 연계·융합전공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6. 연계·융합전공 이수신청자는 연계·융합전공 이수에 필요한 실험실습비 등을 별도로 납부할 수 있다.
- ③ 연계·융합전공의 교과목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항 신설 2018.3.12.>

[본조 신설 2015.12.11.]

제 9 장 휴학, 복학 및 퇴학

- 제26조** (휴 학) ① 휴학은 일반휴학, 군 입대 및 육아(임신·출산·육아) 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2.>
- ② 휴학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입학생은 입학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단, 질병, 군복무 및 육아(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4주 이상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7.9.1., 2016.5.19., 2016.12.2.>
- ③ 일반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사유를 기재하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병 또는 가정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7.9.1., 2008.2.11., 2014.2.24., 2017.11.29.>

④ 군 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 입대 휴학원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9.1.>

⑤ 군 입대 휴학은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고 군제대일을 휴학기간 만료일로 본다.<개정 2007.9.1.>

⑥ 일반 휴학자로서 휴학기간 중에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 군 입대 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휴학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외국인 유학생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한국어교육을 위해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수학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별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항 신설 2007.9.1., 개정 2008.2.11., 2017.3.21.>

⑧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청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항 신설 2016.9.29.>

⑨ 육아(임신·출산·육아)휴학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 시 가능하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항 신설 2016.12.2.>

제27조 (복 학) ① 복학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기 초 4주 이내에 군제대 복학자는 제대일을 기준으로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16.5.19.>

② 군 제대일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4주선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휴가증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및 소속부대장 발행 수학허가원을 제출하여 수업일수 4주선 이전에 수학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8.2.11., 2017.11.29.>

③ 학칙 제41조제2항의 “해당학기에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영명령서를 받고 휴학한 자가 귀향 조치된 경우

2. 질병, 육아(임신·출산·육아) 및 기타 사정으로 휴학한 자가 그 사정이 호전되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다만, 위 각 호의 사유로 인한 복학은 휴학전의 결석일수와 휴학 기간을 합한 일수가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4주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11.29.>

3. 전 1호의 해당자는 즉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④ 휴학기간 중 조기복학을 원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학기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⑤ 학칙 제41조제3항에 의거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사전에 해당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야한다.<개정 2008.2.11., 2010.7.1.>

⑥ 학칙 제41조제4항에 의거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사전에 해당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야한다.<신설 2008.2.11., 2010.7.1.>

제28조 (자 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에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기재, 지도교수와

소정 경우처를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0.>

제 10 장 학기재수 및 과목재수

제29조 (학기재수 및 과목재수) ① 학기재수의 신청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한다. <개정 2016.5.19.>

②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학기말 성적 평균평점이 1.80미만인 자<개정 2008.10.1.>
2. 학기당 3과목 이상의 성적이 F인 자
3. 삭 제<2008.10.1.>

③ 학기재수 대상자는 해당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학기 재수원을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신청,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개정 2016.5.19.>

④ 학기 재수자는 신청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해당학기의 전 과목을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⑤ 학기재수는 성적 취득 최종 학기를 포함하여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를 재이수 할 수 있다. 성적 경고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 성적경고 횟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9.1.>

⑥ 과목재수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과목재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강 신청 해야 한다. 과목재수는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필수과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9.1., 2015.2.27.>
2. 과목재수 대상과목은 각 과목의 C⁺이하의 성적에 한한다.
3. 과목재수 신청학점은 학기당 수강신청학점(18학점)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8.10.1.>
4. 과목재수로 취득한 성적은 당해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여 평점평균을 계산하며, 이전학기에 취득한 해당과목 성적평가는 학칙 제31조에 의거 R(Retake)로 대체한다. 단, 기 취득 성적에 대한 성적경고기록은 말소되지 아니한다.<개정 2014.5.22.>
- ⑦ 과목재수로 재수강하는 과목에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A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수강한 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7.9.1., 2015.2.27.>
- ⑧ 삭 제 <2008.10.1.>
- ⑨ 과목재수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성적 평점에 산입하여 산출한다.<개정 2007.9.1.>

제30조 삭 제

제31조 삭 제

제 11 장 졸업 사정

제32조 삭 제

제33조 삭 제

제34조 (졸업사정) ① 졸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이수학점 130학점이상 취득
 2. 교양과목 영역별 지정 이수학점 취득
 3. 교양필수, 전공필수과목의 전 학점 취득
 4. 전공과목 57학점이상 취득
 5.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00이상
 6. 졸업인증제를 통과한 자(북한이탈주민, 학군제휴 군위탁생, 계약학과 학생 제외)
 7. 해당 학부(과)별 운영내규에 의거 요구되는 졸업요건을 충족
 8. 전 4호에도 불구하고 자유전공학부 졸업대상자의 전공과목 취득학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 1항에 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에 저촉되어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때는 그 학년도에 졸업할 수 있다. 단, 전 1항 제6호외 졸업요건 충족한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③ 부전공 이수 인정은 전 1항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 ④ 복수전공 이수 인정은 전 1항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
- ⑤ 연계·융합전공 이수 인정은 전 1항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다.
- ⑥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학칙 제26조에 의거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⑦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학칙 제26조에 의거 해당 학부(과)별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 내규의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3.12.]

제34조의2 (조기졸업) ① 조기졸업의 신청시기는 2학년 수료 후 학기 초 조기졸업 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이수 신청이 허가된 자는 상위 학년에 전공필수 과목의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2.20.>

- ② 조기졸업자는 본 대학에서 6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졸업소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 학년 통산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9.1.>
- ③ 재학 중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을 때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삭제 <2007.9.1.>
- ⑤ 전 1항의 단서사항에 의거 상위학년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 이후 교과과정 변경으로 필수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0.7.1.>

제34조의3 (졸업인증제) ① 제34조제1항제6호에 의한 졸업인증 선택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로벌소통역량 인증
2. 전문탐구역량 인증
3. 통섭융합역량 인증
4. 창의도전역량 인증

5. 윤리인성역량 인증

- ② 졸업대상자는 제1항의 졸업인증 선택분야 중 글로벌소통역량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졸업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북한이탈주민, 학군제휴 군위탁생, 계약학과 학생은 예외로 한다.
- ④ 전 3항 외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 ⑤ 졸업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해당 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수료로 한다. 단, 수료 이후에 이를 필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말에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8.3.12.]

제34조의4 (우수졸업생) 학칙 제28조 졸업자격을 충족한 학생 중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학적부 및 학위증 등에 기재한다.

1. 최우수(Summa Cum Laude) : 각 학부(과)별 학업성적 누적평점평균 4.25 / 4.50 이상인자
 2. 우수(Cum Laude) : 각 학부(과)별 학업성적 누적평점평균 4.00 / 4.50 이상인자
- [본조 신설 2015.12.11.]

제 12 장 학적부와 제 증명서

제35조 (학적부 기재)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인적사항, 학업성적 및 특기사항은 학적부에 영구 기록 보관하며, 학생의 학적 및 신분상의 제 증명 발행은 학적부의 기재사항에 준거하여야 한다.

- ② 학적부 인적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증명서 발행) ① 본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국문 또는 영문 학적관계 제 증명서는 다음과 호와 같다.<개정 2012.2.20.>

1. 재학증명서<별지서식 1-1(국문), 별지서식 1-2(영문)><개정 2012.2.20., 2016.5.19.>
 2. 재적증명서<별지서식 2-1(국문), 별지서식 2-2(영문)><개정 2012.2.20., 2016.5.19.>
 3. 수료증명서<별지서식 3-1(국문), 별지서식 3-2(영문)><개정 2012.2.20., 2016.5.19.>
 4. 졸업(예정)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별지서식 4-1(국문), 별지서식 4-2(영문) / 졸업증명서 : 별지서식 4-3(국문), 별지서식 4-4(영문)>: 졸업예정증명서는 4학년 1학기(7학기이상) 등록한 재학생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0., 2015.12.11., 2016.5.19.>
 5. 학업성적표<별지서식 5-1(국문), 별지서식 5-2(영문)><개정 2012.2.20., 2014.5.22., 2015.2.27., 2015.12.11., 2016.5.19.>
 6. 휴학증명서<별지서식 6-1(국문), 별지서식 6-2(영문)><개정 2012.2.20., 2016.5.19.>
 7. 제적증명서<별지서식 7-1(국문)><호 신설 2012.2.20., 2016.5.19.>
 8. 기타 학적에 관한 제 증명서<호 신설 2012.2.20.>
- ② 전항에 의한 제 증명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장 학생활동

- 제37조** (학생지도위원회) 학생의 교내·외 활동, 상벌 등을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 (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2.20.>
- 제38조** (구 성) 지도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부(과)장, 학생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1인의 간사를 둔다.
- 제39조** (기 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 업무
 2. 학생 상벌 심의
 3. 학생 자치활동 지도
 4. 기 타
- 제40조** (집회 및 행사) ① 행사 및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행사일 7일 전까지 학생처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3.12.>
- ② 전항의 행사계획서에는 목적, 일시, 장소, 인원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41조** (임원개선 및 회칙개정) 학생단체는 임원개선이나 회칙을 개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 (단체등록) 학생단체의 대표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학생단체등록을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회 칙
 2. 활동계획서
 3. 전년도 활동 실적
 4. 회원명부
 5. 삭 제

제 14 장 학생상벌

- 제43조** (포상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매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2.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3. 선행 및 효행 등으로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개정 2012.2.20.>
 4.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개정 2012.2.20.>
 5. 학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신설 2012.2.20.>
- ② 전 항의 포상대상자 중 당해 학년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포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2.20.>
- 제44조** (포상의 종류) 삭제<2012.2.20.>
- 제45조** (포상의 발의) 제43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처장 또는 학부(과)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 할 수 있다.

1. 성적증명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지도교수 추천서 1부
4. 학부(과)장 의견서 1부

제46조 (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3. 사 제
4.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학교시설을 무단점거 또는 비품을 고의로 파손시킨 자
6.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제47조 (징계의 발의) 제46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부(과)장 또는 학생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1. 사건 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1부
3.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의견서 1부

제48조 (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9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의1 (봉사명령) ①징계가 결정된 학생에게 징계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봉사명령을 이행할 경우 징계는 소멸된다.

② 봉사명령의 종류, 시간, 방법 등은 학생처장이 정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본조 신설 2015.2.27.>

제49조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개정 2015.2.27.>

1. 학생품위를 손상시킨 자
2. 교직원에게 불손한 자
3. 학교 시설물을 훼손한 자
4. 폭행을 가한 자<신설 2015.2.27.>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행하였거나 이를 계획한 자<신설 2015.2.27.>

제50조 (유기정학) 삭제 <2015.2.27.>

제51조 (무기정학) 삭제 <2015.2.27.>

제52조 (제 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에 처할 수 있다.

1.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개정 2015.2.27.>
2. 사 제
3. 사 제
4. 사 제

5. 실행선고를 받은 자
6. 삭 제
7.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한 자
8. 교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자
9. 대학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자

제53조 (심의 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포상대상자

- 가. 학생처장은 포상대상자로서 제43조의 요건을 갖춘 학생이 추천되면 구비 서류를 갖추어 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나. 학생처장은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징계대상자

- 가. 학생처장은 제46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나. 학생처장 또는 지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 다. 학생처장은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 (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①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②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에 참여가 금지된다.
- ③ 근신 이외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 시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 ④ 삭 제

제55조 (징계의 해제) 학생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으로부터 징계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 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56조 (통보 및 등재) ① 학생처장은 포상 및 징계사실을 지도교수, 학부(과)장, 교무처장 및 학부모와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무처장은 포상 및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사실을 학적부에 등재한다.<개정 2015.2.27.>

제 15 장 계절 수업

제57조 (계절수업) ① 계절수업의 개설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한다.

- ② 계절수업의 개설과목은 필수과목과 선수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③ 학급당 인원은 10명 이상 60명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58조 (학 점) 계절수업의 강의시간은 1학점 당 15시간으로 하며 취득학점은 7학점 이내

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7.1., 2014.2.24., 2017.11.29.>

제59조 (수강신청) ① 소정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07.9.1.>

② 수강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 삭 제

제 16 장 학부 운영

제61조 (전공신청 및 배정) 삭제<2012.2.20.>

제62조 (학점이수) ① 삭제<2012.2.20.>

② 삭제 <2007.9.1.>

제63조 (전공의 변경) ① 삭제<2012.2.20.>

② 삭제<2012.2.20.>

제64조 (복수전공) 삭제<2012.2.20.>

제65조 (졸업사정) 삭제<2012.2.20.>

부 칙

1. (시행) 이 시행세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시행세칙은 1981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1981학년도 이후의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복학, 재입학, 편입학 및 유급하는 자의 졸업학점은 본 시행세칙 제15조에 의하며,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다.
3. 이 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8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경과규정) 1982학년도 이후의 입학생들과 동일학년에 복학, 재입학, 편입학 및 유급하는 자는 본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8. 동 시행세칙 제30조(중도수료) 제2항 제2호, 198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시행세칙 제32조(특별시험)는 198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9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경과조치) ① 학력종합평가시험은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 학칙시행세칙 제29조 제5항 제4호의 단서에 언급한 해당과목은 1996학년도 이후에 이수한 것에 한한다.
- ③ 학칙시행세칙 제29조 제6항의 과목재수 또는 학기재수 대상 과목은 1996학년도 이후에 이수한 것에 한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경과조치) 학칙시행세칙 제29조 제6항의 취득 성적 제한의 대상에서 1996학년도에 이수한 학기재수 대상과목은 제외한다.
19. (수강신청)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9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9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1.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 시행일 이후에 복학, 재입학 및 편입학생은 개정 학칙시행 세칙을 적용한다.
22.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 제61조 내지 제65조의 학부운영에 관한 규정은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0년 3월 이전의 학과가 학부로 편성된 학과에서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해당 학년·학기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개정된 학부의 해당전공, 학년·학기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한다.
- ③ 전 항의 학부운영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23.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동 세칙 제9조의2에 의한 일반프로그램과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200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동 세칙 제61조 제1호의 전공신청 및 배정은 200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4.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8년 2월 이전에 편입학한 학생은 본 학칙시행세칙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교 비행교육원 조종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2008년 3월 이전 본 대학교 비행교육원 조종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 한하여 본 학칙시행세칙 제2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한 없이 재이수할 수 있다.

35.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동 세칙 제9조의3에 의한 일반프로그램과 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동 세칙 제25조 제1호 및 제64조 제1호의 신청자격 변경은 2010학년도 복수전공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36.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동 세칙 제29조 제2항의 신청자격 변경은 2009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3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9.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4조의 3의 컴퓨터분야 졸업인증 폐지는 2013년 3월 1일 이후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3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종 전 시행세칙 제6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전공과목 5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도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40.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제10항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군사교육 교과목의 학기당 학점 수” 는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15조제1항 “실험·실습 또는 설계과목으로 팀별평가가 필요한 강좌”에 대한 절대평가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하며, “20명 미만 강좌”에 대한 절대평가는 2014학년도부터 폐지한다.
 ④ (경과조치) 제34조제1항제2호 “총 이수학점 중 교양이수학점은 27학점 이상 취득” 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1.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업일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58조는 수업일수가 매 학년 32주 이상(매 학기 16주 이상)으로 조정되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 (등록금운영에관한규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하며,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4.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 세칙 중 제15조의 성적평가 방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개정 세칙 중 제29조 제6항 제1호, 제29조 제7항의 과목재수 횟수 및 제한학점 변경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이전 과목 재수횟수는 횟수제한에 산정하지 않는다.
 ④ (경과조치) 개정 세칙 중 제34조 제1항 제6호, 제34조의 3 제3항의 졸업인증제 대상의 학사편입생 포함은 2015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⑤ (경과조치) 개정 세칙 중 제56조 제2항의 학적부 징계사실 등재 변경은 2014학년도

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45.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1. 개정 세칙중 제4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1조의 2, 제11조의 3 제4항, 제34조 제1항 제1호는 2013학번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2. 개정 세칙중 제8조 제3항의 수강신청 학점 초과이수 신청자 성적기준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2013학번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46.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7.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 세칙 중 별지서식 1-1부터 7-1까지의 개정 서식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48.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중 제8조 및 제25조의3은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49.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50.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 세칙중 제25조의 3은 2017학년도 1학기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 절차에 의거 지원한 자부터 적용한다.
5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2.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세칙 중 제34조의3(졸업인증제)는 2018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신·편입생은 종 전 세칙을 적용한다.

【별지서식 1-1】 <개정 2016. 5. 19.>

제 호

재 학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학 부(과)

전 공

학 년 제 학년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장

【별지서식 1-2】

KOREA AEROSPACE UNIVERSITY

76 Hanggongdaehak-ro,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412-791, Korea
TEL:82-2-300-0114, FAX:82-2-3158-2123

No. _____

Date _____

CERTIFICATE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Sex :

Date of Admission :

Major 1 :

Major 2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a _____
_____ of Korea Aerospace University.

Dean of Academic Affairs

* At Korea Aerospace University, Previously named as Hankuk Aviation University.

【별지서식 2-1】 <개정 2016. 5. 19.>

제 호

재 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학 부(과)

전 공

학 년 제 학년

재 적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장

【별지서식 2-2】

KOREA AEROSPACE UNIVERSITY

76 Hanggongdaehak-ro,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412-791, Korea
TEL:82-2-300-0114, FAX:82-2-3158-2123

No. _____

Date _____

CERTIFICATE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Sex :

Date of Admission :

Major 1 :

Major 2 :

Duration of Enrollment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was a registered student and attended _____ of Korea Aerospace University.

Dean of Academic Affairs

* At Korea Aerospace University, Previously named as Hankuk Aviation University.

【별지서식 3-1】 <개정 2016. 5. 19.>

제 호

수료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학 부(과)

전 공

학 년 제 학년

재 적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장

【별지서식 3-2】

KOREA AEROSPACE UNIVERSITY

76 Hanggongdaehak-ro,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412-791, Korea
TEL:82-2-300-0114, FAX:82-2-3158-2123

No. _____

Date _____

CERTIFICATE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Sex :

Date of Admission :

Date of Completion :

Major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completed _____
_____ of Korea Aerospace University.

Dean of Academic Affairs

* At Korea Aerospace University, Previously named as Hankuk Aviation University.

【별지서식 4-1】 <개정 2016. 5. 19.>

제 호

졸업예정 증명서

성 명

생 년 월 일

학 부(과)

전 공

학 년 제 학년

졸업 예정 일 년 월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장

【별지서식 4-2】

KOREA AEROSPACE UNIVERSITY

76 Hanggongdaehak-ro,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412-791, Korea
TEL:82-2-300-0114, FAX:82-2-3158-2123

No. _____

Date _____

CERTIFICATE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Sex :

Date of Admission :

Major 1 :

Major 2 :

Date of Graduate-to-b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a Senior in _____
_____ of Korea Aerospace University.

Dean of Academic Affairs

* At Korea Aerospace University, Previously named as Hankuk Aviation University.

【별지서식 4-3】 <개정 2015. 12. 11, 2016. 5. 19.>

제 호

졸업증명서

(최)우수졸업¹⁾

성 명
 생 년 월 일
 학 부(과)
 전 공
 복수/부전공²⁾
 연계·융합전공³⁾
 인증프로그램⁴⁾
 졸업 일자
 학위등록번호
 학 위 명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장

1) (최)우수졸업생 한하여 표기함.
 2~4) 해당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표기함

【별지서식 4-4】 <개정 2015. 12. 11, 2016. 5. 19.>

KOREA AEROSPACE UNIVERSITY

76 Hanggongdaehak-ro,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412-791, Korea
TEL:82-2-300-0114, FAX:82-2-3158-2123



No. _____

Date _____

CERTIFICATE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Sex :
Date of Admission :
Date of Graduation :
Major :
Multi major/ minor²⁾ :
Joint major³⁾ :
Accredited program⁴⁾ :
Degre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graduated from _____ of Korea Aerospace University.

Dean of Academic Affairs

* At Korea Aerospace University, Previously named as Hankuk Aviation University.

- 1) <(Summa) cum laude> is entitled only to the graduates whose accumulated GPA is above 4.00(Cum laude) and 4.25(Summa cum laude)
- 2) ~ 4) The program names are inscribed for bachelor degree students who completed certain programs which the president approved.

【별지서식 5-1】 <개정 2014. 5. 22, 2015. 2. 27, 2015. 12. 11, 2016. 5. 19, 2016. 9. 29.>

학 업 성 적 표

제 호 학번 성명 생년월일 단과대학명 또는 인문자연학부

1)학부(과)명	2)제2전공	입(편입)학일자	졸업(수료)일자	학위명	학위등록번호
1)주전공					

구분	과목명	학점	성적	구분	과목명	학점	성적	구분	과목명	학점	성적

(최)우수졸업³⁾

총취득학점		평점평균		총평점		백분율	
-------	--	------	--	-----	--	-----	--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장

년 월 일

*구분은 두자리숫자로 표기되며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첫 번째 자리 : 1교양 2기초 3전공 4일반 5부전공 6복수전공 7연계·융합전공 8교직 9학석사연계
 두 번째 자리 : 1필수 2선택 3영어강좌 필수 4영어강좌 선택
 *성적구분: A+ = 4.5, A0 = 4.0, B+ = 3.5, B0 = 3.0 C+ = 2.5, C0 = 2.0, D+ = 1.5, D0 = 1.0, F = 0
 *성적구분이 P(합격), NP(불합격), R(과목제수)인 과목은 평점평균에서 제외
 *학석사연계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 성적(이수구분 12)은 학부 평점평균 및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
 1) 학부(과) 명칭 및 주전공 : 학부(과) 명칭 및 주전공 승인자에 한하여 해당 전공 명칭 표기
 2) 제2전공 : 복수/부전공, 연계·융합전공 승인자에 한하여 해당 전공 명칭 표기
 3) 최우수졸업(Summa cum laude) 누적평점평균 4.25이상, 우수졸업(Cum laude) 누적평점평균 4.00이상 인자에 한하여 표기

【별지서식 5-2】 <개정 2014. 5. 22, 2015. 3. 1, 2015. 12. 11, 2016. 5. 19.>

KOREA AEROSPACE UNIVERSITY

76 Hanggongdaehak-ro,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412-791, Korea
TEL:82-2-300-0114, FAX:82-2-3158-2123

No. **TRANSCRIPT OF ACADEMIC RECORD** Date: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Student No : Sex : School :	Date of Admission : Date of Graduation : Degree of Conferred : Major :
COURSE TITLE CREDITS GRADE	COURSE TITLE CREDITS GRADE
TOTAL CREDITS : xxx GRADE POINT AVERAGE : xxx	
REMARKS 1. Hours per week : 1 credit is given for one hour class. and for two or more hours of laboratory work per week for one semester. 2. Weeks per year : One academic year is divided into 1st and 2nd semesters. each of which spans 16 weeks 3. Required Credits : Minimum 140 Credits for B.S degree. (Minimum 130 Credits for B.S degree who entered after year 2013) 4. The grading system is in effect since the 1975 academic year : A+4.5, A0 .0, B+3.5, B0 3.0, C+2.5, C0 2.0, D+1.5, D0 1.0, F Failure. 5. Grades : "A" for 100-90. "B" for 89-80. "C" for 79-70. "D" for 69-60. "F" for 59-0, "P" for Pass "NP" for No Pass. and "R" for Retake 6 Grade "P", "NP", and "R" do not affect GPA. 7. Grades A, B, C and D assigned before 1975 are still regarded as A, B, C, and D respectively. 8. Graduate credits earned from Fast Track program must be excluded from undergraduate GPA and total credits earned. 1) Summa Cum Laude is conferred upon bachelor degree students whose accumulated GPA is above 4.25. 1) Cum Laude is conferred upon bachelor degree students whose accumulated GPA is above 4.0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fde9d9;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Summa) cum laude ¹⁾ </div>	
_____ Dean of Academic Affairs	

* At Korea Aerospace University, Previously named as Hankuk Aviation University.

【별지서식 6-1】 <개정 2016. 5. 19.>

제 호

휴 학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학 부(과)

전 공

학 년 제 학년

휴학 년월일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장

【별지서식 6-2】

KOREA AEROSPACE UNIVERSITY

76 Hanggongdaehak-ro,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412-791, Korea
TEL:82-2-300-0114, FAX:82-2-3158-2123

No. _____

Date _____

CERTIFICATE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Sex :

Date of Admission :

Major 1 :

Major 2 :

Date of Temporary Leav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was a registered student and attended _____ of Korea Aerospace University.

Dean of Academic Affairs

* At Korea Aerospace University, Previously named as Hankuk Aviation University.

【별지서식 7-1】 <개정 2016. 5. 19.>

제 호

제 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학 부(과)

전 공

학 년 제 학년

제 적 년월일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장